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2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권향엽·윤종군·이병진

소병훈 • 이재강 • 서영석

안태준 • 조계원 • 조인철

박용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 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.

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,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%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,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지적한 바 있으며,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「통신비밀보호법」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려는 것임(안 제83조,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,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10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9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94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95조제8호를 삭제한다.

제104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・② 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검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 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 다).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, 수사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 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(이하 "통신이용 자정보"라 한다)의 열람 또는 제출(이하 "통신이용자정보 제 공"이라 한다)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 1. 이용자의 성명 2.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. 이용자의 주소 4. 이용자의 전화번호

- 5. 이용자의 아이디(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)
- 6.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

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시공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(이하 "정보제공요청서"라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 이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

<삭 제>

추어 두어야 한다.

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 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 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 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| <삭 제>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 려야 한다. 다만,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 려야 한다.

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| <삭 제>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· 운영하 여야 하며,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 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제83 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을 받은 검사, 수사관서 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(이하 "수사기관등"이라 한다)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(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 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 다)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.

- 1.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내용 및 사용 목적
- 2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<u>자</u>
- 3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

<<u>삭 제></u>

날짜

-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. 1.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 우
- 2.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증거인멸, 도주,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피의자, 피해자 또는 그 밖
 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
 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
 소
- 5. 질문・조사 등의 행정절차의

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

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다.
- 1.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가 있는 경우: 해당 사유가

해소될 때까지의 기간

- 2.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
 사유가 있는 경우: 두 차례에
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
 위에서 정한 기간
-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,
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
 국의 기관・단체와 외국인 또
 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
- 2.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
-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

 통신이용자정보
 제공을
 받은

 사실의
 통지를
 위하여
 필요한
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: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 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
- 2.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: 그 당사자 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 자인지 여부
-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

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 는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6 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.

8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3조의3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)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
- 2.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
- 3.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 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 수 업무
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이

- 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는 해 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 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 다.
-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.
-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-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 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

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심사를 받으면 「주민등 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-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 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①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 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- 8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3조의4(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·감독)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관리·감독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 을 조사할 수 있다.

- 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- 2.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 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 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・기술 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
- 3.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<u>항</u>
- 4.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

 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

 런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- 1. 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

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

통	보	관련	자료를	갖추어	누
지	٥}	·니한	경우		

- 2.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 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 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·기술 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93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7 ①·② (생 략)
 -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- 제9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및 그 제공을 받은 자
- 제9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

제93조(권한 등의 위임] 및 위탁)
①・② (현행과 같음	·)
<삭 제>	

제94조(벌칙)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
제95조(벌칙)	

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7. (생략)
- 8.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

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

 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

 의 용도로 이용한 자

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생 7 략)
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·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.
- 1. ~ 12. (생 략)
- 13.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

 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

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

 갖추어 둔 자
- 14.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아니한 자

15. ~ 17. (생 략)

1. ~	7. (현행과 같음)
<삭	제>

제104조(과태료)	1	~	4	(현행
과 같음)				
⑤				
1. ~ 12. (현행	생과	같음	<u>)</u>	

<삭 제>

<삭 제>

15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⑥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